

# 2025년 진주시배구협회 회장 당선인 공고 및 대국민 사전공개 검증 실시

2025년 진주시배구협회 회장 당선인으로 당선된 손창봉(66.07.27.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, 불임의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진주시배구협회 2025년 회장선거 당선인

기호	성명	생년월일	직업 및 직위	임기
	손창봉	66.07.27.	에이치엘건설(주) 대표이사	2025.01.31. ~ 2029년 정기총회 전일

## 대국민 사전공개 검증

○ 제보기간: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음(임기 동안 수시 제보)

○ 제보처: 진주시배구협회

(담당자 010-9346-0008, 이메일 swjkl11@naver.com)

- 불임 1.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 1부.  
2. 회장 당선인 공고문 1부.

2025. 1. 20.

진주시배구협회선거관리위원장



## 임원의 결격사유(진주시배구협회 규약 발췌본)

**제29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)
 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·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4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·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5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·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  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   -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  6.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
  7. 사회적 물의,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
  8.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
- 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-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
[붙임 2]

[별지 제4호서식]

## 회장 당선인 공고

2025년 1월 20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 
2025년도 진주시배구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 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당 선 인

- 성 명 : 손 창 봉
- 생 년 월 일 : 1966. 7. 27.
- 직업 및 직위 : 에이치엘건설(주) 대표이사

2025년 1월 20일

진주시배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

